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 및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국방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사복지실 1개 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년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및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

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9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대응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감염병대응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제6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을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단서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을 “2명(행정사무관 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5명(4급 2명)”을 “18명(4급 5명)”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를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로,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를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병영문화 혁신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

송통신사무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제20조의6제1항 중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을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한다.

별표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를 삭제한다.

별표 1의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 1 다음에 “부이사

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2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6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2”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36”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52”를 삭제한다.

별표 2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2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 1”를 삭제한다.

별표 5의2의 인사복지실 군인재해보상과의 평가기간란 중 “2023년 9월 30일”을 “2025년 9월 30일”로 한다.

별표 6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며,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며,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며,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별표 6 일반직 계 7 다음에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을 신설하고,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다음에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신설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하고,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를 삭제하며, 일반직 계 1 다음에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를 신설하고,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대변인) ① (생 략)	제3조(대변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대변인 밑에 공보담당관 · 정책홍보담당관 및 디지털소통팀장 각 1명을 두되, 공보담당관은 영관급장교로, 정책홍보담당관은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u>	② ----- ----- ----- ----- --- <u>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u>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생 략)	제4조의2(기획조정실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총괄담당관 · 조직총괄담당관 · 조직관리담당관 · 혁신행정담당관 · 계획예산총괄담당관 · 인력운영예산담당관 · 전력유지예산담당관 · 재정회계담당관 · 지능정보화기획담당관 · 데이터정책담당관 · 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	⑥ ----- ----- ----- ----- ----- ----- ----- -----

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⑤ (생략)

제6조(감사관) ① (생략)

② 감사관 밑에 직무감찰담당관 · 종합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 및 국방민원센터장 각 1명을 두되, 직무감찰담당관 · 종합감사담당관 · 사업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며, 국방민원센터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7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는 서기관으로, 송무소청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감사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지원과)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⑤ (생략)

제10조(인사복지실) ① ~ ⑤ (현
행과 같음)

⑥ 자원관리실장 밑에 군수기획과 · 장비관리과 · 물자관리과 · 탄약수송관리과 · 재난안전관리과 · 군수지능화팀 · 시설기획과 · 시설제도기술과 · 건설관리과 · 부대건설과 · 국유재산과 · 군주거정책과 및 환경소음팀을 두며, 군수기획과장 · 물자관리과장 · 재난안전관리과장 · 시설기획과장 · 시설제도기술과장 · 건설관리과장 · 부대건설과장 · 국유재산과장 및 군주거정책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장비관리과장 및 탄약수송관리과장은 영관급장교로, 군수지능화팀장 및 환경소음팀장은 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

--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과학기술서기관 · 서
기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
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
무관 · 방송통신사무관 · 행정사
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

②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

② _____

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
(4·5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15명(4급 2명, 5급 3명, 6급 3
명, 7급 2명, 8급 2명, 9급 3명)
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
제」 제27조에서 “국방부령으
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법무
관리관·감사관 및 국방전산정
보원장을 말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5항에 따
라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국방일
자리정책과장, 성폭력예방대응
담당관, 국방홍보원 국방일보부
장 및 국방홍보원 방송뉴미디어
부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생략)

② 군공항이전사업단장 밑에 이
전총괄과장, 이전사업과장 및
이전계획과장 각 1명을 두되,

-- 18명(4급 5명)-----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군공항이전사업단) ① (현
행과 같음)

② -----

이전총괄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이전사업과장은 영관급장교로, 이전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생략)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생략)

② 군인권개선추진단장 밑에 군인권총괄담당관·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병영문화혁신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팀장 각 1명을 두며, 군인권총괄담당관 및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 ⑦ (생략)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의2(군인권개선추진단장)

① (현행과 같음)

② -----

----- 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병영문화혁신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양성평등정책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서기관·공업사무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제20조의3(방위산업수출기획과)
① 방위산업수출기획과장은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① ----- <u>부이사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제20조의6(국방연구개발총괄과)
①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으로 보한다.	① ----- <u>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 구 정원 대비표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2</u>	+12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36</u>	+36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 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 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52</u>	+52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2</u>	<u><삭 제></u>	-12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6</u>	<u><삭 제></u>	-3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방부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6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12</u>	+12
<u>서기관</u> 또는 <u>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36</u>	+36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52</u>	+52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2</u>	<u><삭 제></u>	-12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36</u>	<u><삭 제></u>	-36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국립서울현충원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1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2</u>	+2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 사무관 또는 임업사무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2</u>	<u><삭 제></u>	-2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 관 또는 임업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6]

국방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제외) 정원표(제20조제6항, 제20조의2제7항, 제20조의3제2항, 제20조의4제2항, 제20조의6제2항 및 제20조의7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 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 관·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 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 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2</u>	+2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 · 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2</u>	<u><삭 제></u>	-2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 · <u><신 설></u>	· ·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u>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사서사무관 · 공업사무관 · 임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환경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신 설></u>	<u>1</u>	+1

<u>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u>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 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 임업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 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 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u>	<u>1</u>	<u><삭 제></u>	-1
·	·	·	
·	·	·	
<u>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u>	<u><신 설></u>	<u>1</u>	+1
<u>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u>	<u>1</u>	<u><삭 제></u>	-1
·	·	·	
·	·	·	